



의안번호

제118호

**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서 원 의원 외 6인
제출연월일	2020. 10. 13.

#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8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13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조배식 김진호,  
최정숙, 김만중,  
박영자, 이계천

## 1. 제안이유

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체계화 및 연구 활동기간을 삭제하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지정(안 제6조 제2항)
- 나. 연구 활동 계획서 제출 시기 조정(안 제9조 제1항)
- 다.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를 매년 12월 20일까지로 개정(안 제13조 제1항)
- 라. 제출기한을 각각 5월말, 12월말을 5월 31일, 12월 20일까지로 개정(안 제13조 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38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 : 조례안 붙임
 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 - 2) 입법예고 : 2020. 10. 10. ~ 10. 17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- ② “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2월말” 을 “3월말” 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,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” 를 “ 매년 12월 20일까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월 말, 12월 말” 을 “ 5월 31일, 12월 20일까지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 원 의원 외 6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6조(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)</b>  <u>① (생략)</u>  <u>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.</u>  <u>③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</u></p> <p><b>제9조(연구활동 계획의 제출)</b>  <u>①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</u>  <u>②(생략)</u></p> <p><b>제10조(연구활동 기간)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.</b></p> <p><b>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</b>  <u>① 제11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</u></p>	<p><b>제6조(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)</b>  <u>① (현행과 같음)</u>  <u>②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</u>  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b>제9조(연구활동 계획의 제출)</b>  <u>① 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 3월말 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</u>  <u>-----</u>  <u>②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b>제13조(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</b>  <u>① -----</u>  <u>----- 매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,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 종료 1개월 전까지</u> 별지 제7호서식에 다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·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<u>5월말, 12월 말</u>까지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u>년 12월 20일까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월 31일,</u></p> <p><u>12월 20일</u>-----</p> <p>④(<u>현행과 같음</u>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1.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 
-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
  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